

C 기획특집

2002년의 새로운 무역상기술장벽

국제표준과 건축사무관 김대자
02)509-7400 daeja@ats.go.kr

I. 개요

수입국의 예상치 않았던 기술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은 수출기업에게 많은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수입국이 새로운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경우 수출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새로운 기술규제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을 획득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국제 무역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표준 및 인증제도 등 기술규제를 통칭하여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라 한다.

ITA(정보기술협정)에서 IT제품의 관세율을 0%로 조정을 시도하는 등 최근의 전세계적인 평균관세율 저하 추세 속에서, 무역상기술장벽은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수출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OECD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표준 및 기술기준 등 무역상기술장벽의 영향을 받는 제품이 전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이 된다고 한다. 수출의 존적인 경제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실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에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WTO, OECD, ISO, IEC 등 각종 국제기구를 통하여 입수된 세계적인 기술규제 변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보급함으로써 국내수출 기업들이 받게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다.

II. 무역상기술장벽의 새로운 국제적 대조류

무역상기술장벽과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큰 방향은 환경, 노동, 지속적 성장 등 범세계적 현안(Global Agenda)에 명분을 둔 새로운 규제의 도입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규제의 대상 지역이 국경과 무관하게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UN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1월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은 세계적 대기업을 CEO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글로벌 경제(new global economy)”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제안은 잇단 후속 실무 작업 및 회의를 가져왔고, 2000.7월에 이르러서는 Global Compact라는 프로그램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Global Compact는 UN 주도 하에 인권, 노동, 환경 등 기업이 지켜야할 9대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준수 및 참여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ILO, UNEP, UNDP 및 UN Fund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적 대기업을 CEO들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Global Compact가 주창

하는 9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Global Compact : 9대 원칙 >	
UN 사무총장은 국제적 기업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다.	
인 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인 인권보호를 지원할 것 2. 자신의 기업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지 않음을 보장할 것
노 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단결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식을 지지할 것 4.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의 철폐를 지지할 것 5.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것 6.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을 철폐할 것
환 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환경적 위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을 지지할 것 8. 환경적 책임의 확대 노력에 참여할 것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할 것

Global Compact가 무역상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기술적 규제에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는 9대 원칙의 내용이 뛰어난 선진 각국의 새로운 기술규제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9대 원칙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항은 첫째, 인권, 노동권 등 과거에는 정부의 소관으로 여기던 사항을 기업의 의무로 제시하기 시작한 점과 둘째, 환경보호를 위해 사전예방적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라는 요구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생산방법을 채택하라는

요구는, 수입국이 범지구적 명분에 근거하여 다른 생산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간접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동향의 실제적 예시를 제3장 및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2년에 다가올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거대 시장 중국의 WTO가입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향후 국제교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무역상기술장벽과 관련하여 중국은 이미 상당한 제도변화를 시행하였는 바,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II. 환 경

공장 배출 오염물 규제 →
원료,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을 규제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가시화 및 환경라운드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를 사유로 하는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존에는 과거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만을 규제하던 단순한 방식에서 제품의 전과정 즉 원료채취, 제조공정, 유통, 사용, 폐기의 제반과정에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Global Compact에서 말하는 사전예방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국가의 환경기준을 그 국가와 교역을 하는 다른 국가에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주권의 역외적용’이라거나 ‘환경제국주의’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즉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출국(주로 개도국)내의 환경오염을 수입국(주로 선진국)이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로 선진국의 높은 환경기준이나 환경정책상의 목표를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강요하는 것들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서도 엄청난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1. EU의 움직임

1999년 EU 각료회의(Council) 및 의회(Parliament)는 공동으로 “유럽 표준화를 위한 결의사항”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2001. 9. 26일 EU 집행위에서는 상기 결의사항의 이행계획(COM(2001)527)을 작성하여 각료회의 및 의회에 각각 보고하였다.

동 이행계획 보고서의 제24 절에서 EU 집행위는 환경보호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서 “총체적 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수립·운영할 계획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적 설계 지침(EEE Direc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desig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안)을 제정토록 하고, 2002년 중 IPP의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IPP(Integrated Product Policy)의 개요

기존의 환경규제는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수질 대기, 폐기물)을 법적 규제를 통하여 통제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로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에서 비롯되는 환경문제(원자재 채취 및 가공, 제품사용 및 폐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에 제품의 전과정(원료, 가공, 사용, 유통 및 폐기)에 걸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EU 집행위의 정책을 일컬어 IPP라고 칭한다.

나. IPP 관련 EU 지침 제정 현황 및 평가

- EEE Direc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desig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주요 내용: EU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DfE: Design for Environment)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대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DfE를 시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EU의 환경인증(EU Flower)을 획득하여야 한다
- 진행 현황: 2001년 2월 EEE Directive 초안이 발간되었으나, 현재 산업계와 EU 집행위간에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EU의 산업계에서는 ISO TR 14062 규격을 EEE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DfE 시행증거의 근거 문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 평가: EEE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제품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기법을 도입하여야만 한다. 즉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사용, 폐기의 전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자원이 소비되고 부산물이 나오는지를 과학적 data로 분석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기업은 LCA규제를 접해본 적이 없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과정분석을 통해 환경친화적 설계를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동 EEE Directive 작성방식으로 신접근법(New Approach)을 활용할 예정인 바, 이는 Directive에서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과 적용 대상 제품군만을 규정하고 제품별 세부 기준은 유럽의 지역표준화기구인 CEN으로 하여금 제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CEN의 관련 표준화

- 동향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관련 홈페이지: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electr_equipment/eee/index.htm
 - o WEEE Directive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주요 내용: 동 지침의 목적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율을 높임으로서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제조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에 책임을 지게되며, 반면 EU의 소비자는 구입한 장비를 무료로 처리할 수 있게된다.
 - 진행 현황: 2002년 6월 최종안이 발간될 예정이나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해 EU 집행위와 산업계간의 이해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 중에는
 - . WEEE directive가 시행되기 전에 판매된 제품의 폐기책임은 누가 지는가
 -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비용까지 제조자가 책임을 지어주는가
 - .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폐기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 . 제품제조회사가 파산한 경우 동 제품의 폐기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 . 제조회사가 해당제품 제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도 폐기비용을 책임져야 하는가 등이 포함된다.
 - 평가: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1992년에 최초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래 환경에 유해한 배출물을 규제하는 한편 폐기물예치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전자제품 중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4대 가전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 반해 EU의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매우 강력한 폐기물 규제를 시행한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은 우리나라의 대 EU 주요 수출품목인 관계로 관련기업이 적극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홈페이지: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docum/00347_en.htm
 - o RoHS Directiv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 주요 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전기전자제품의 폐기 및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규제대상 물질에는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화가스지연제 2종, pbb, pbde 등이 포함되며, 2008년까지 상기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여야 한다. 특히 pbb, pbde의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해 내화성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 진행 현황: 입안 당시 동 지침은 시행시기를 2004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시기가 2008년으로 연기되어 있다. 또한 일부 산업계에서는 이 지침을 EEE Directive와 통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평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상가지침이 폭발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납의 사용금지가 큰 역할을 담당한다. 즉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은 모두 납땀을 이용하여 전선을 서로 연결하거나 기판을 조립해 왔는데, 향후 납이 금지물질이 될 경우 용융점이 높은 다른 금속을 땀재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땀온도 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서 원활히 뱀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2. 미국의 움직임

지난 2000년 1월 미국은 “국제 돌고래 보호법”을 신규 제정하고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참치제품에 “Dolphin-Safe”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연방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WTO/ TBT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2000년 6월부터 시행된 등 규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 규정이 마크 부착을 의무화 한 것이 아니라 마크 부착방법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을 감안할 때 참치 제품에의 “Dolphin-Safe”마크 부착은 사실상 의무화된 것과 다름없으며, 세계 1위의 참치 수출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강제적인 환경규제보다 이 규정이 더욱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참치 제품이 환경 오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참치 포획 과정이 환경 오염(돌고래 포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즉 미국 영토 내에서의 오염행위를 유발하지 않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환경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제표준화기구의 움직임

상기한 미국 및 유럽의 움직임과 병행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규제를 과학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근거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 작업은 ISO/ TC207(환경경영기술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ISO/ TC207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ISO 14000 인증 규격을 제정한 기술위원회이다. 최근 ISO/ TC207은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관련 국제표

준 제정 작업을 사실상 완료하였다고 선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ISO/ TC207이 제정 완료한 국제규격 목록은 다음과 같다.

- ISO 14040 : 1997 환경경영- 전과정평가- 원칙 및 기본구조
- ISO 14041 : 1998 환경경영- 전과정평가- 목표, 범위정의 및 목록분석
- ISO 14042 : 2000 환경경영- 전과정평가- 전과정영향평가
- ISO 14043 : 2000 환경경영- 전과정평가- 전과정해석
- ISO TR 14047 환경경영- 전과정평가- ISO 14042의 적용 예 (현재 작업중)
- ISO TS 14048 환경경영- 전과정평가- 데이터 문서화 양식 (현재 작업중)
- ISO TR 14049 : 2000 환경경영- 전과정평가- 목표, 범위정의 및 목록분석에 대한 ISO 14041의 적용 예

IV. 기업의 윤리성

기업의 윤리성을 선언하는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예정

2001년 6월 25일 프랑스의 신문인 “Les Echos”는 정부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최초의 사례가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프랑스의 석유회사인 TotalFina사가 미얀마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으로 인해 경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향후로는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OECD의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2000년 UN에서는 “Global Compact Network”를 통해 SA 8000 및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ILO에서도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를 제정 공표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SA 8000은 미국의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前 CEPAA)에서 1997년 제정한 표준으로서 아동노동, 보상, 차별, 강제노동, 근로시간, 보건 및 안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환경에 대한 인증시스템 규격이다. 또한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은 기업이 제품생산 및 서비스 활동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통일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부응하여 선진 각국의 정부는 기업의 윤리기준을 표준화하여 사실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1. EU의 움직임

2001년 7월 EU 집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녹색(Green Paper)을 발간하였다. 동 녹색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 의무”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인적자원, 환경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동 녹색은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항목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 내부적 기준

- 평생교육, 일과 여가의 균형, 노시간 이익분배, 비차별적인 인력채용 등을 포함하는 “인적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시스템
- 표준화된 “작업장안전보건(Health and safety at work)” 시스템
- 최근의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을 고려하는 한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변화에 대한 순응(Adaptation to Change)” 시스템
- EU의 IPP에 부응하는 “환경영향 및 천연자원 관리(Manage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natural resources)” 시스템

○ 외부적 기준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에 대한 기여
- 공정거래, 중소기업지원, 품질확보 등을 통한 “협력기업, 공급자 및 소비자(Business partners, suppliers and consumers) 보호
- 작업환경개선, 아동노동금지 등 “인권(Human rights)” 보호
- “지구차원의 환경 고려(Global Environmental concerns)”

상기 녹색을 입안한 EU 집행위원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향후 EU가 기업의 윤리성을 강제법으로 의

무화하게 될 가능성은 적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윤리성에 대하여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EU 집행위가 매우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유럽내 각 기업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의 움직임

미국의 민간부문에서는 개요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AI가 제정한 SA 8000 표준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2001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85개 기업이 SA 8000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SA 8000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없으나 SA 8000에 대한 적합성을 선언한 기업은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A 8000 인증 현황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SA 8000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중국(31개) 및 아시아지역 개도국(21개)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선진국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도국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ww.cepaa.org 참조)

한편 미국정부에서도 기업윤리에 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무성 민주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에서는 오일 가스 및 광업에 관련된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안전 및 인권강령(Principal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을 공표하였고, 또한 “노동착취공장 제거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to eliminate Sweatshops)”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비정부단체 대학 및 노동단체가 연합하여 미국 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 중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업을 선정하여 미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등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국제표준화기구의 움직임

EU집행위 관계자의 전언처럼 각국 정부가 기업의 윤리성에 대하여 강제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빠른 미래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윤리에 관한 사항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경우 새로운 인증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져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대표적인 국제표준 제정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5월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는 “세계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Global Market)”에서 제안한 “시장에 근거한 공정관행(market-based codes of conduct)” 국제규격안에 대하여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도록 승인하였다.

동 국제규격안은 ISO 이사회 및 기술관리이사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는 바, 기술관리이사회는 결의사항을 통해 COPOLCO로 하여금 동 규격안의 적용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동 규격을 일반적인 ISO 표준(standard)이 아닌 IWA(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일반적인 ISO 표준(standard)은 ISO의 정회원국 대표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투표에 의해 제정되는데 반해, IWA는 ISO 주관 하에 국제적인 Workshop을 개최하여 합의를 이루는 형태로 제정되며, 따라서 제정기간이 매우 단축되는 반면 전체 회원국의 합의 과정이 생략되는 단점이 있다.

한편 COPOLCO의 세계시장작업반에서는 ISO 기술관리아사회의 지시에 따라 2001년 11월 검토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는 바, 동 보고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규 국제표준인의 적용범위
 -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기업의 윤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왔으나,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합의를 이룬 문서는 없었으며, 그 적용범위 또한 기준을 발행한 기관별로 매우 상이한 상황
 - 이에 ISO가 현재까지의 관련 기준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제정코자 하며, 그 형식은 제조자의 자체환경선언 방법을 규정한 ISO 14021 규격과 매우 유사하게 제정될 예정
- 발간 형식
 - ISO 기술관리아사회가 권고한 IWA보다는 standard 형태로 제정하기를 희망하며, 동 제정작업을 ISO 9000규격을 제정한 바 있는 ISO/TC176과 같은 기술위원회가 직접 담당하기를 희망
 - 만약 기술위원회를 통한 표준제정작업이 실패할 경우 기술관리아사회의 권고와 같이 IWA로의 발간을 검토

이상의 ISO/ COPOLCO 검토 보고서가 그대로 시행에 옮겨질 경우, ISO는 기업의 윤리성을 기업 스스로가 선언하는 방법을 규정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V. 중국의 변화

CCIB마크 및 CCEE마크의 폐지 →
단일강제인증마크(CCC마크)제도 시행

지난 2001년 국제교역에서의 가장 큰 이슈로 중국의 WTO 가입을 내세우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WTO 가입을 통한 세계화의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중국은 많은 변화와 노력을 시도하였다. 특히 표준 및 인증분야에서의 이러한 노력을 결실로 2001년 12월 중국정부는 강제인증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리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동 지침은 연 180억달러에 이르는 대중국 수출품목의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되는 매우 강력한 지침인 만큼 국내 기업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동 지침이 발표된 세부적인 경과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국의 표준·인증분야 정부 조직 개편

WTO가입 이전 중국에는 국가표준화, 국내산품에 대한 품질감독, 계량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품질기술감독국 (CSBTS : State Bureau of Quality and Technical Supervision)」 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제품의 품질검사 및 검역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CIQ : State Administration for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이 존재하였다.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을 별개로 관리하는 두 조직의 존재는 “내국 민대우의 원칙”이라는 WTO의 기본 아념에 부합하지 않았고, 특히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CIQ가 부여하는 강제마크(CCIB마크)와 CSBTS가 부여하는 강제마크(CCEE) 모두에 대해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각국의 비난 및 개선요구가 이어졌고 중국 국무원은 CSBTS와 CIQ의 통합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4월 상기 두 조직을 통합한

단일 기구로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AQSIQ: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이 탄생하였고, AQSIQ의 소속 위원회로서 표준화를 전담하는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SACS: State Administration of China for Standardization)」와 적합성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설립되었다.

2. 단일 강제인증제도

상기 조직개편에 뒤이어, 2001년 12월 AQSIQ는 과거 CSBTS가 운영하던 CCEE마크 인증제도와 CIQ가 운영하던 CCIB마크 인증제도를 통합한 단일 강제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다. 중국과의 교역에 관계되는 모든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등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강제제품인증관리규정 (Regulations for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중국국가품질기술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5호)

- 일반사항
 - 강제제품인증제도의 범국가적인 운영 주체는 AQSIQ 및 CNCA가 됨
 - 강제제품인증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동물과 환경의 보호 및 국가안보에 관련된 제품에 한함
 - 강제제품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인증대상제

품목록, 기술기준, 국가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단일강제마크, 수수료율을 고시함

-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
 - AQSIQ: 강제제품인증제도관련 기준 및 인증대상제품목록을 승인
 - CNCA: 강제제품인증제도의 운영을 관장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책임짐
 - 관련 인정 및 인증행위를 총괄 감독
 - AQSIQ가 인증대상제품목록을 개발 고시하는 것을 보좌
 - 인증대상제품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적용기준 개발 및 인증모델 결정
 - 인증마크, 인증서의 서식을 결정
 - 제품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증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들의 공식목록을 업무수행범위와 함께 고시
 -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사업자의 공식목록을 고시
 - 특수 목적을 위해 강제인증의 예외가 되는 제품을 승인
 - 강제인증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을 처리
- AQSIQ의 지방조직
 - 관찰지역내 인증대상제품을 감독하고 불법행위를 제재
- 지정인증기관
 - 지정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인증행위 수행
 - 인증서 발급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
 - 관련 이의제기 및 불만을 처리
 - 필요시 인증서의 정지 및 취소
- 인증제도의 운영
 - 인증대상제품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인증모델이 적용됨
 - 설계 평가(design appraisal)

- 형식 시험(type testing)
- 공장에서 수집한 샘플의 시험 또는 검사
- 시장에서 수집한 샘플의 시험 또는 검사
- 제조자의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 검사
- 제조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는 지정인증기관 다음 요건을 갖추어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신청서, 운용규정(implementation rule)에 의거 요구되는 기술문서, 샘플
 - 도소매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 제조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 인증 신청자가 대리인을 지정코자 하는 경우 인증 시험 초기공장검사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를 담은 계약서 사본
 - 인증 수수료
- 지정인증기관은 신청서를 검토 후, 필요한 형식 시험, 공장검사, 샘플시험 등을 수행하며 운용규정에 의거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결정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됨
- 인증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신청자
 - 제품명, 형식 및 시리즈
 - 제조자 및 그 공장
 - 인증의 모델
 - 근거가 된 기술기준 및 표준
 - 인증서 발급 일자 및 유효기간
 - 인증서를 발급한 지정인증기관명
- 인증마크는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마크"라 칭함
 - 인증제도의 감독
 - 지정인증기관, 지정시험기관 및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CNCA의 감독을 수용하며 주기적으로 인증상황을 보고
 - 신청서 검토, 시험, 검사 및 인증결정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지정업무영역 내에서의 컨설팅 및 제품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 강제인증대상품목의 인증과 관련하여 승인 없이 타기관과 MRA를 체결하여서는 안됨. 기타품목에 대한 MRA는 허용됨
 - AQSIQ 지방조직의 불법제품 제재 노력에 협조하여야 함
 - 인증을 획득한 제조자, 수입업자 및 판매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증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보장
 - 인증제품이 관련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함을 보장
 -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제품임을 보장
 - 관련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인증제품에 부착
 -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양도 또는 판매는 금지
 - AQSIQ 지방조직의 사후관리 및 지정인증기관의 사후검사를 수용
 - 벌칙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RMB 30,000(약 4,800천원)의 벌금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하고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 (약 1,600천원)의 벌금
 - 부칙
 -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나. 강제제품인증표지관리방법(Regulations for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Mark)

(근거 : 중국국가품질기술감독검험검영총국령 제5호 강제제품인증관리규정)

강제성신제품인증관리규정에 의거 CNCA에서는 CCC마크 도안을 동 규정에 의거 규정하고 있다.

다. 제1차 강제인증대상제품목록

(First Catalogue of Products Subject to Compulsory Certification)

동 제1차 목록에 포함된 강제인증대상제품은 총 132개 제품군으로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제품명은 참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Electrical wires and cables (total 5 categories)
2. Switches for circuits, Installation protective and connection devices(6 categories)
3. Low-voltage Electrical Apparatus (9 categories)
4. Small power motors (1 category)
5. Electric tools (16 categories)
6. Welding machines (15 categories)
7.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18 categories)
8. Audio and video apparatus (not including the acoustics apparatus for broadcasting service and automobiles) (16 categories)
9.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T) (12 categories)
10. Lighting apparatus (2 categories) (not including the lighting apparatus with the

voltage lower than 36V)

11.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 categories)
12. Motor vehicles and Safety Parts(4 categories)
13. Motor vehicle Tyres(3 categories)
14. Safety Glasses (3 categories)
15. Agricultural Machinery (1 category)
16. Latex Products (1 category)
17. Medical Devices (7 categories)
18. Fire Fighting Equipment (3 categories)
19. Detectors for Intruder Alarm Systems (1 category):

- 관련 홈페이지: <http://www.aqsiq.gov.cn/doc/renzheng/firstshi.htm>

라. 강제제품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통지 (Circular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 일반사항
 - 새로이 시행되는 강제제품인증제도(CCC마크인증제도)는 과거 CCIB마크 인증제도 및 CCEE 마크 인증제도를 대체하게 됨
- 인증의 효력 발생 시기
 - 새로운 CCC마크 인증제도는 2002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
 - CCIB 및 CCEE마크 인증을 기 획득한 기업을 위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며, 이 두 가지 마크는 2003년 5월 1일부로 무효화됨
- 인증대상품목에 대한 관리
 - 2003년 5월 1일 이후 인증대상제품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규인증제

-
- 도에 의한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함
 - 단 2003년 4월 30일 이전에 수입하거나 구매한 제품으로서 CCIB 또는 CCEE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를 허용함
 - 종전의 CCIB 또는 CCEE마크 강제인증대상 품목이었다라도 신규 인증 제도의 강제인증대상 품목이 아닌 제품의 경우 2002년 5월 1일부터는 인증을 획득하지 않아도 됨
 - 인증신청의 접수
 - 2002년 5월 1일부터 지정인증기관은 신규 인증
 - 제도에 대한 신청만을 접수하여야 함
 - 2002년 4월 30일까지는 종전 인증제도에 의한 신청을 수행함
 - 부가사항
 - 종전 인증제도에 의해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신청자 및 인증을 획득한 신청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신청을 통해 신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 상기 조항의 추가 신청에 따른 부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